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6.28.]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6.2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300호), 10년 공공임대주택(250호), 토지등소유자 분양분(1,550호)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3,578호)의 혼합단지입니다.

※ 공공임대는 별도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2년 5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평일 09:00 ~ 18:00)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90(십정동)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 수	세대별 계약면적(㎡)					금회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월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현재 공가 호수	대기 예비 자	현재 모집 예비 자			
				기타 공용	주차장								
18A	206	18.7080	19.2357	1.0415	10.5970	11.6385	288	48	0	240	113	철근콘크리트구조/ 개별(가스)난방	'24.11 이후
18B (주거약자)	34						102	17	0	85			
35A	50	35.3029	34.3463	1.9654	19.9970	21.9624	16	1	0	15	120		
35B (주거약자)	10						6	1	0	5			

-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 금번 공급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하는 18형, 35형은 1인 가구의 신청을 권장**하오니, 모집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비 고
1인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인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인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 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적용구분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가」군	18A/ 18B (주거약자)	1,848,000	369,000	1,479,000	36,800
	35A/ 35B (주거약자)	3,489,000	697,000	2,792,000	69,400

적용구분	주택형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계약시20%)	잔금 (입주시80%)				
「나」군	18A/ 18B (주거약자)	14,145,200	2,829,000	11,316,200	109,400	(+)13,000,000	27,145,200	34,000
						(-)10,000,000	4,145,200	138,400
	35A/ 35B (주거약자)	26,431,600	5,286,000	21,145,600	205,700	(+)30,000,000	56,431,600	31,700
						(-)20,000,000	6,431,600	263,700

- ※ 계약금은 계약시(20%), 잔금은 입주시(80%)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임대차 계약시 전환보증금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은 변경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7%)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3.5%)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전환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
- 가목~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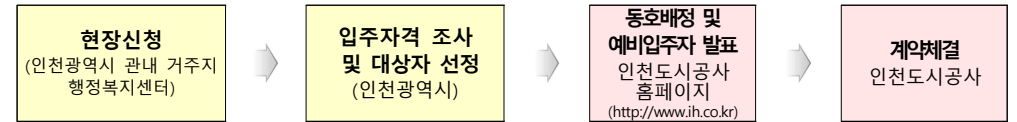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서류접수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일반 주거약자	2024.07.15.(월) ~07.17(수) (10:00~17:00)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4.11.15.(금) (17:00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h.co.kr)	2024.11.25.(월)~11.29(금) (10:00~16:00) 인천도시공사 신관1층 고객센터

- *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계약장소)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 **계약체결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에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 분리배우자 ’)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외국인인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 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이 확정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이 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퇴거완료)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입주 전 세대 분리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별	2.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가구원수	50%	60%	70%	80%	90%
	1인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2인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7인	5,175,747	6,210,896	7,246,045	8,281,194	9,316,344
	8인	5,569,852	6,683,822	7,797,793	8,911,763	10,025,734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3.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용 적용대상(또는 적용비용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용: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자산	- 출생자녀별 가산비용: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임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용 적용대상(또는 적용비용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용: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임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자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 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원)	자동차가액(원)
차. 일반입주자	1인	0인	70%	241,000,000	37,080,000
		0인	60%	241,000,000	37,080,000
	2인	1인	70%	265,000,000	40,790,000
		0인	50%	241,000,000	37,080,000
		1인	6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70%	290,000,000	44,500,000
나. 국가유공자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0인	90%	241,000,000	37,080,000
		0인	80%	241,000,000	37,080,000
	2인	1인	90%	265,000,000	40,790,000
		0인	70%	241,000,000	37,080,000
		1인	8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90%	290,000,000	44,500,000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임주자는 소득기준 60%(4,319,189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5,000,000원, 자동차가액 40,790,000원을 적용함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여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가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 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일반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18A, 35A)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주거약자용 주택(18B, 35B)은 별도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6. 주거약자용 주택」참고)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 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사람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2순위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배점 합산 (아래배점 기준표 참조)	➡	인천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사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 ~ 5년 미만	24	
	5 ~ 10년 미만	26	
	10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40 ~ 50세 미만	21	
	50 ~ 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포함) (30점)	1 ~ 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6.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18B, 35B)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 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해당자)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일반공급 나목(유공자등)에 해당하는사람 중 일반공급 가목(생계/의료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사람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가목(생계/의료수급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나. 일반공급 나목(유공자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종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배점 합산 (아래배점 기준표 참조)	➡	인천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총계		9
1. 신청자 연령 (2점)	만70세이상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2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1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3 2 1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1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4.06.2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아래의 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 이후 발급 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구비서류		비 고	비고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별지1호 서식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별지3호 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합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4호 서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증독,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별지5호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 1통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호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호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행정복지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4.11.15.(금)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천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http://www.i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 **2024.11.25.(월) ~ 11.29.(금) 10:00~16:00**
- 계약장소 : 인천도시공사 **신관1층(고객센터)**,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인천도시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새롭게 추가 제출해야 함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증명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7호 서식), 계약자인감 증명서(본인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계약자 도장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계약금 납부 지로용지는 계약시 교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SMS, 유선 또는 등기우편으로 안내하오니, **당첨 후 계약자 본인 전화번호 및 주소 등 연락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및 주소 등 연락처 미기재,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공급 일정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복 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4년의 경우 3,708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본 단지는 iR+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차,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 전 지구 및 단지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 여건	■ 구역여건 ·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구역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구역과 관련한 각종평가(교육환경영향평가, 학습환경보호계획, 수질오염총량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신축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실시설계도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 40m 도로변과 동측 20m 도로, 북측의 15m 도로, 단지내 도로에 인접한 동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의한 소음, 먼지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상정 초등학교, 하정 초등학교, 심정 초등학교 등이 배치되어져 있으며, 이에따라 단지 내부 도로가 통학로로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과 북서측에 어린이 공원이 계획되어져 있으며, 보행로가 단지와 연결되어져 있어, 생활소음 발생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과 북서측에 종교용지가 계획되어져 있으며, 추후 교회 등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 단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을"(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는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을"은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개공지,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 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본 공동주택은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 예정입니다. (그린2등급). · 본 공동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에너지효율1등급).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성능등급표기 인증을 득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의 인증을 득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일반등급). · 본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소음예측평가, 인천시 CPTED(범죄예방건축기준, 범죄예방대책관리), 학습환경보호설계, 교육환경보호계획, 수질오염총량제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에 따라 일부 벽체의 단열 종류 및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일반분양(기업형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분양, 공공임대(영구임대, 10년임대) 등이 함께 계획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리 및 물리적인 구획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아파트)의 면적은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소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구분	유의사항
	· 면적 변 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계단실 공용면적은 동 타입별 공용 면적의 합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사용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아파트)부분의 대지면적을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지적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지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대지 지분정리 등에 따라 건축물 배치,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내, 외부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 휴게공간 등의 선형,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과 같은 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은 경관녹지, 어린이공원, 종교용지 등과 접해 있으며 단지 외부로부터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이의는 반영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와의 나머지 부지(도로, 공원, 녹지 등)는 인허가 과정과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한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축벽 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채 등)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피트층 출입구, 동현관, 지하 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경관 조명 등 외부 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을"(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는 외관향상 또는 기능적인 목적의 장식물, 경관조명 등 기타 시설물이 설치됨 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등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철거, 이전은 불가 합니다. · 단지 명칭, 동번호,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련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본 계약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1~3층) 외벽 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석재, 석재뿔칠, 도장 등이 혼용 적용됨. · 일부 세대는 단지 내에 위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 환기구, 조명시설, 가스 정압시설, 휴게소,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문주,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광장 등의 위치와 크기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진동, 일조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한 세대 또는 저층세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단지 내 시설물(아파트,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로, 공원, 종교시설부지 및 기타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로 인해 동별, 향별, 층별로 소음, 일조, 조망, 냄새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여건이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은 각각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 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

구분	유의사항
	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 조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경계부에 주변도로와 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행통로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와 인접한 세대는 생활소음 발생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벽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보행자 출입구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제외하고 남측 40m도로변에 4개소, 동측 20m도로변에 1개소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측에 인접한 동은 경비실과 문주가 설치되어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는 보차혼합로 이기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부대시설과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가 설치되어져 있기에 혼잡과 통행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1동, 유치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어져 있으며, 근린 생활시설 1동과 유치원은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차량 진출 입구는 단지 내 도로의 진출입구와 북측과 동측의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냄새발생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돌출된 지하 기계/전기실 D.A, 채광창(타라이트),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상부층 및 인접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진입구는 후면 코어이며, 필로티가 있는 코어의 세대는 필로티로 진입합니다. · 단지 배치와 층높이에 따라 일부세대의 경우 이삿짐 사다리차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을"(계약자) 편의를 위하여 경비실 2개소가 설치됩니다.(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각 1개소 설치) · 전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규모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2개 층이며, 단지 레벨차이로 인해 경사로가 발생되며, 지하주차장으로부 터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로 진출입이 가능한 주동통합형입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대수는 6,152대로 세대당 약 1.08대의 비율로 산정하였음,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에 전체로 연결되어 있고, 단지 배치 특성상 동별로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경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 구획까지의 동선거리,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름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평면배치 상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와 벽체가 접하는 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다소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탁실은 비단열 공간으로, 세탁실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및 수전류 등이 겨울철에 동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3동,120동의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니다. · 120동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 조항에 따라 지붕층이 층수와 높이에 산입되어져 있습니다. ·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아파트 단지명(브랜드)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및 추가 시공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을"(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의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단지내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지역정압기(16㎡~25㎡)가 110동 옆 램프구간 코너에 설치 예정이며, 향후 정압기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인 또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단,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지붕층에 소방설비 제연환이 설치되므로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층 이상에 해당하는 동에 한하여 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102 동, 103동 제외). · 일부 동 근처에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근생 주방용 배기팬이 설치되어 소음 및 악취가 전 달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식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에 피난기구가 설치됩니다.(3층 ~ 10층). · 복도식주택의 경우 인접세대로 피난을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됩니다. · 각 동 1층에 소화활동을 위한 연결송수구가 설치됩니다.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외기 취입구가 1층 발코니 하부 또는 별도의 환기탑이 구획되며, 크기 및 높이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아울러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환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보일러, 환기시스템은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 될 예정이며, 공용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고,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경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제5항에 의

구분	유의사항
	거 교체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우수관 홀통이 막히는 경우 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장(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됩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홈네트워크건물 AA등급 인증 건물입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엘리베이터 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을"(계약자) 부담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인터넷 전용회선(단독IP) 설치시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을"(계약자) 부담입니다. ·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세대내 조명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폰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스마트폰 원격제어 시 사용자 통신요금 발생됩니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각 동별 1개소 설치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수량은 각 동별 세대수에 따라 상이함) ·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또는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내부, 각 동의 출입구, 단지 주·부출입구,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 함, 단지내부보행로(일부) 등의 위치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동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경비원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통제시스템(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적용되고, 설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에 따라 진입차량 햇빛 난반사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차량 번호 미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을"(계약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타 시설의 각종 설비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이 지하층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문주 등 조명(공용조명, 단지 홍보용사인물 등)이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해당동 : 104동, 105동 111동, 116동, 119동 122동, 123동, 127동)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동별 20층에서 22층사이 1개층에는 측면, 전·후면 발코니 상·하부 위치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피뢰침은 약 60cm 돌출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해당동 : 101동, 102동, 103동, 106동, 112동, 113동, 118동, 119동, 120동, 123동, 125동, 127동, 128동)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전기요금)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을"(계약자)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상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전력은 공용 전력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을"(계약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엘리베이터 설치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반(공급위치), 단지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내부 포장 재질 및 형태는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시공과정 등에 따라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휴게, 놀이, 운동, 편의 및 혐오시설 등 포함)의 설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각종 식재 및 시설(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 조명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천광역시 미술장식품 설치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소, 재활용품보관창고, 자전거보관대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실제 시공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사이, 105동, 108동, 109동 사이, 110동, 111동, 112동 사이, 115동, 116동 사이, 116동, 117동, 123동, 124동 사이, 113동, 114동, 120동, 121동 사이, 122동, 123동, 126동, 127동 사이, 125동, 126동, 128동 사이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은 101동 후면부, 103동 측면부 사이, 109동 전면부 110동 측면부 사이, 120동, 121동, 125동, 126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다. - 어린이집1은 104동, 105동, 108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107동 방향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2는 경로당, 122동, 123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122동 방향 에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데크 노출면에 자연 사면 및 자연석 쌓기 구간이 일부 발생하며, 시공범위.구간.재질은 변경 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을"(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재료 또는 재질 및 시공범위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자전거 보관 시설은 사업시행인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각종 인증(녹색건축물 인증 등) 및 관련부서 협의에 의해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는 각 주동의 주변 생활동선 상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 등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0동, 119동, 근린생활시설 사이 그리고 117동, 123동, 124동 사이에 설치되는 어린이물놀이장, 103 동, 106동 사이 연못, 121동, 122동 사이 연못의 겨울철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에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을"(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13동] 1호, 2호 세대와 13호,14호 세대의 1,2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4호 앞 복도 창 크기는 프라이버시 확보 및 인동거리 확보를 위하여 다소 작게 설치됩니다. 1호, 2호, 13호, 14호 세대의 16층은 피난안전구역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 인승은 15+17인승이며, 엘리베이터 속도는 120m/min 으로 설치됩니다. [120동] 1,4,5호 세대의 1,2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호, 4호, 5호 세대의 22층은 피난안전구역이 있습니다. - 정화조 배기덕트가 120동 메인샤프트에 있으며 32층 바닥(6호 옥상)에 배기팬 설치됩니다. - 지붕에 소화용 옥상수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 인승은 15+17인승이며, 엘리베이터 속도는 120m/min 으로 설치됩니다. [영구임대 주거약자용 주택] 113동, 120동 저층부에 주거약자를 위한 세대(44세대)가 구성됩니다. - 주거약자 세대 중 전용면적 18㎡ TYPE은 113동 1~3층에 34세대가 위치하며, 전용면적 35㎡ TYPE은 120동 1~4층에 10세대가 위치합니다. - 주거약자세대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설치항목</th></tr> <tr> <td>현관</td><td>마루갑틀 경사로</td></tr> <tr> <td>욕실</td><td>안전손잡이,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 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td></tr> <tr> <td>주방</td><td>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td></tr> <tr> <td>거실</td><td>비디오폰 높이 조정, 시각 경보기, 야간 센서등(욕실 출입구)</td></tr> </table> ■ 마감재 및 기타사항 - 세대 바닥구조는 표준바닥 구조로 시공 됩니다. "을"(계약자)의 생활환경(대형수족관,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과도한 음식물 조리 등) 에 의한 과다습기 발생, 단열성능/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인한 세대 내부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 증기량 증가(상대습도 증가)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 및 난방가동 등 적정 상대 습도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복층 세대는 단위세대 방향에 따른 일사량 차이로 결로 발생에 취약한 경우 개별적인 보안을 해야 하며 추후 이 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각 세대의 현관 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다용도실 가구 포함)로 인하여 가려지는 면(천장, 가구 뒷면, 옆면, 바닥)과 욕실장, 욕실거울,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거울, 수납장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 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 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의 인조대리석의 시공시 발생하는 접합 이음매가 노출, 설치됩니다. - 전동형 빨래건조대 사용시 발코니 사이즈 및 형태에 따라 일부 벽체와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차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을"(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 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비단열 공간으로 단열재 및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며, 외부창호 설치로 인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손상이 있을 수 있어 입주 후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화재시 구조대가를 위하여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	구분	설치항목	현관	마루갑틀 경사로	욕실	안전손잡이,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 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거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시각 경보기, 야간 센서등(욕실 출입구)
구분	설치항목										
현관	마루갑틀 경사로										
욕실	안전손잡이,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 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거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시각 경보기, 야간 센서등(욕실 출입구)										

구분	유의사항
	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인접세대와 접한 발코니의 세대 경계벽은 조적 및 경량벽체구조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창문개방 시 풍향 등의 영향을 받아 외벽 환기구로부터 창문을 통하여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 온도차에 따른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정형으로 설치되는 가구에 접하는 부위는 바닥, 벽, 천정 마감재가 미시공됩니다. · 주택형별, 타입별 서비스 면적, 가구, 수납공간의 크기 및 마감재는 서로 상이한 바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물딩, 걸레받이 등과 인테리어 시트 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줄눈 및 접합부 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전체 규모,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각각의 규모, 마감재(주요 바닥, 벽체, 천정 마감 : 타일, 또는 석재, 석재뿔칠, 도장 마감 중 택일)는 시공사의 디자인에 따라 시공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주민덧발도 포함)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1종 기계환기 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천정에 시공하며 작동 중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18㎡ 및 35㎡ Type은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이 없으며 발코니 바닥에 설치토록 설계됨. · 전용면적 18㎡ 및 35㎡ Type의 전열교환기는 거실천정에 설치되어집니다. · 전용면적 18㎡ 및 35㎡ Type의 욕실, 주방배기 방식은 공동배기 방식으로 옥상층으로 배출됩니다. (59㎡Type이상은 욕실,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임)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됩니다. (전용35㎡이하는 1개소) · 일부 발코니에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의 개소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 상부에 에어컨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개별 인테리어 작업주의 요합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을"(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내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수전류, 위생도기류, 보

구분	유의사항
	· 일러 등 각종 기구류 및 장비류의 설치위치 및 제조사(제품사양)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2층 및 최상층은 세대내 방법을 위하여 동체감지기를 설치합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등의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월패드 전화 송·수신 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인터넷 전화 사용불가) · 세대내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거실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은 현관 신발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및 전화 · 인터넷 · TV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등 해당장치와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할 경우 신발을 꺼내는 등 입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 220V ×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 바랍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등의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을"(계약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10.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동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태면적율	★
2. 자연지반 녹지율	★
3.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4. 비오톱 조성	★★★★
5.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6.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7. 세대내 일조확보율	★
8.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9.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10. 자연통풍 확보여부	해당없음
1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1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13. 음식물 쓰레기 저감	★★
14.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15.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16.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17.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18. 우수이용	★★★★
19. 중수도 설치	해당없음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에너지성능	★★★★
21. 신재생에너지 이용	★★
22.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23.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2.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4.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
5.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여부	★★
6. 도시중심및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7. 전용부분	★
8. 공용부분	★
9.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0.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11. 방범안전 콘텐츠	★
12.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13.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14.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소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호너비	★★
6. 피난설비	★★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독(감리)회사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인천도시공사 (131-82-08879)	(주)포스코건설 (506-81-02280)	건원엔지니어링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i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iH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18B, 35B) 편의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안전손잡이,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 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거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시각 경보기, 야간 센서등(욕실 출입구)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래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심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출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래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제청중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중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학회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항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업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평일 09:00 ~ 18:00)
-----	--

△ i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6. 28.



[별지 1-1호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앞면, 신청자작성)

영구임대주택(일반)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전용면적	☐ 18A(18.70㎡)	가구원수		
				☐ 35A(35.30㎡)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 화()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일반 공급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4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1-1호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뒷면,지자체에서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구분		배점 100점	득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신청자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24		
	5년 이상 ~ 10년 미만	26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		
2. 신청자 연령 (25점)	15년 이상	3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만40세 미만	19		
	만40세 이상 ~ 만50세 미만	21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만50세 이상 ~ 만60세 미만	23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만60세 이상	25		
	1 ~ 2인	24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3인	26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자 □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유형7: 혼인가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유형8: 귀환국군포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재대군인 ▶ 비수급자 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자 □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유형5: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유형7: 혼인가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유형8: 귀환국군포로
	4인	28		
	5인 이상	30		
	15 (유형 3가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 신청자격증명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 ☐ 예비입주자증복불가사항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기타증빙서류		

[별지 1-2호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주거약자용)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전용면적	☐ 188B(18.70㎡) (주거약자용)	가구원수		
				☐ 35B(35.30㎡) (주거약자용)	가구원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		해당 시·도		년 월 일	
		집 전화() -		/시·군전입일			
주거약자용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으며, 3층 이하 저층으로 공급							
신청 순위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 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				
1세 이하 자녀 유무 (O , X)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 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4년도 기준가액 총자산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청 귀하							
※여기서부터 지자체에서 작성							
구분		배점	득점	배점기준			
1. 신청자 연령 (2점)	만 70세 이상	2		▶ 만 나이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1					
2.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만10년 이상	3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만5년 이상 ~ 만10년 미만	2					
3.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점)	만1년 이상 ~ 만5년 미만	1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만1년 이상 ~ 만5년 미만	1					
4. 장애정도 (3점)	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5. 1세 이하 자녀 유무				▶ 입주자 선정순서에서 선정대상 여부 확인용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 신청자격증명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 ☐ 예비입주자증복불가사항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기타증빙서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또는 배우자)은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이재명 | 박원순 | 김문기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인천도시공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이월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 공문증정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 본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으
 주지.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도시공사 국토교통부 001도시자 / 001상징구조구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인재주택
 입자인 자력 신도시 및 선정순회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보·임대 확인, 임대주택 거
 주자 신도시 및 민족도 조사, 입자권 불일·양도·전대 확인, 임대주택 정
 책 자치 활동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항복주체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우,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적속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해당여부, 장애유형 정도 등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처리 및 방법 : 수반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폐수]** 본인은 위 2조 7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3항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복지정보포털),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3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지분 확인 및 동별 제49조의2에 따라 불법 임대·전대 임차정보를 관리하는 민간관리주거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업조사업무 수탁자 및 전산관리 조사 업무 수탁자, 인천도시공사사업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주소·재산·소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세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세조사	성명, 생활지원, 연락처, 계약 내역, 가족관계사
임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임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납입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임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우체주소변경을 통한 <u>임료 고지</u> <u>지시 및 각종 안내문 발송</u>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액, 입주자경 감지원금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인 중복계약확인 및 불법 임대 등 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기간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특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특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 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특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절차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인내를 받았습니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인천도시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기간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 경과 후 처리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특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특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본 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 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제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제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제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제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호서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원	[임차인]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아니오 ☐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		원	[출자자]	
		아니오 ☐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아니오 ☐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예 ☐		원	[차주]	
		아니오 ☐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임주자격, 해당절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 6-1호서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아래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 성명 : _____ • 주민등록상주소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연락처 : _____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연락처 : _____	
구분	동의
개인 정보/ 금융 정보	동의내역 상기 (1), (2)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상기 (1), (2)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영구임대주택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귀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인천광역시장/ 인천도시공사 귀하

위 임 장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임내역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영구임대 주택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붙 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